##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9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정춘생·서왕진·황운하

김준형 • 이해민 • 신장식

박은정 · 차규근 · 강경숙

김선민 · 백선희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하여 확대·유포하여 이를 유튜브 구독자 및 구독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①選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①-
擧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	
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
	<u>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u>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
	연히 사전투표 • 투표 및 개표
	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
	적으로 유포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